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568

제출년월일 : 2014. 11. 20.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가로청소 및 지도 업무는 구청으로 위임함.(안 별표2)

-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1회용품 사용 억제, 폐기물배출자 분리 배출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신고,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나. 시설수급자의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업무를 구청으로 위임함.(안 별표2)

- 시설수급자 개인급여 수기지급 금지에 대한 복지부 지적사항 반영

다. 대부해양관광본부로 이관되는 대부도 관련 단위사무를 정비함.
(안 별표2)

- 대부도 지역(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선감동, 풍도동)의 농지이용 및 관리,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 및 열람,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 인·허가 및 사후관리 등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수행하는 단위사무를 구청장 위임사항에서 제외함.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04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8조, 제15조의2, 제68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의3, 제36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 기초연금법 제14조, 부칙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4. 11. 5. ~ 11. 12.(7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민선6기 조직개편안 확정 및 자치법규 개정 계획(총무과-28374, 2014.11.6.)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박 미 라
	계장·팀장 직위·성명	조직교육계장 이 범 열
	담 당 자 성명·전화	한 복 수 (행정 3108)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별 지>

【별표2】

사업소의 장 · 구청장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감사관	1. 구 및 동 감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회계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	구청장
		2. 구 및 동 소속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처분	·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총무과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계획 및 허가	·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	구청장
		2. 병가 및 공가 허가	· 같은 조례16조, 제17조	
	2.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발령 및 전보, 휴직, 복직에 관한 사항(다만, 6급 무보직 보직발령 및 6급의 휴직, 복직은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6조	
		2. 6급 이하 정기 호봉 승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안 전 사 회 지원과	1. 재해·재난관리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 및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 구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구청장
		2. 설해예방대책 및 설해로 인한 재해의 경감대책 강구	·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2. 풍수해보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보험료 지원, 손해평가 관련 업무 지원	· 풍수해보험법 제33조	
		2. 대상시설물에 대한 실사 협조, 보험통계 자료 집적		
		3. 보험가입 안내·홍보, 가입자 관리 등		
	3. 예비군의 육성·지원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예비군부대(지역대/기동대)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 유지의 지원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32조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2. 예비군부대(지역대/기동대) 사무실의 신개축 및 보수의 지원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자 치 행정과	1.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자원봉사자 운영 2. 주민자치센터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구청장
세정과	1. 시세부과 · 징수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납세의 고지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 시세기본조례 제5조	구청장
		2. 부과취소 및 변경	· 지방세기본법 제58조 · 시세기본조례 제5조	
		3. 납기전 징수	· 지방세기본법 제73조 ·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 시세기본조례 제5조	
		4.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7조 ·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9조 · 시세기본조례 제5조	
		5. 물납, 분할납부	· 지방세법 제117조, 제118조 ·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내지 제116조 · 시세기본조례 제5조	
		6. 가산금 및 독촉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내지 제61조 ·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40조 · 시세기본조례 제5조	
		7. 체납처분	· 지방세기본법 제5장 · 시세기본조례 제5조	
		8. 결손처분	· 지방세기본법 제96조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 시세기본조례 제5조	
		9. 교부청구	· 지방세기본법 제99조 내지 제102조 · 시세기본조례 제5조	
		10. 관허사업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65조 ·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 시세기본조례 제5조	
		11. 시세징수유예 등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내지 제84조 ·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내지 제71조 · 시세기본조례 제5조	
		12. 과오납금의 처리 (환부이자 계산)	·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내지 79조 · 같은법시행령 제63조 내지 제66조 · 시세기본조례 제5조	
		13. 시세의 소멸시효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40조 ·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시세기본조례 제5조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14. 서류의 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내지 제32조 ·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6조 · 시세기본조례 제5조	
		15. 공시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시세기본조례 제5조	
		16. 징수촉탁	· 지방세기본법 제68조 ·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 시세기본조례 제5조	
		17. 공 탁	· 지방세기본법 제72조 · 시세기본조례 제5조	
		18.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 시세기본조례 제5조	
		19. 시세납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 같은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 · 시세기본조례 제5조	
		20.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발급	·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1.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	
		22.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 시세기본조례 제5조	
		23. 세무조사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 내지 제113조 · 같은법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3조 · 시세기본조례 제5조	
	2. 수입증지판매 및 운영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수입증지 판매에 대한 계약 체결 및 관리	·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3. 세목별과세 (납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 같은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 · 시세기본조례 제5조	동 장
		2.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발급	·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 역 경제과	1. 담배소매인 지정	1. 담배소매인 지정	· 담배사업법 제16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구청장
		2.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3. 담배소매인 휴폐업신고 수리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4.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담배사업법 제17조	
생 명 산업과	1. 농지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 농지 처분의무 통지(청문)	· 농지법 제10조 · 농지법 제55조	구청장
		2. 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농지법 제11조 · 농지법 제62조	
		3.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 농지법 제20조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법 제8조	
		5. 농지임대차 관리	· 농지법 제23조	
		6. 농지 불법행위 지도 단속 및 고발·행정처분(청문)	· 농지법 제42조 · 농지법 제54조 · 농지법 제57조 · 농지법 제58조 · 농지법 제59조 · 농지법시행령 제58조	
	2.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 농지원부의 작성 및 비치	· 농지법 제49조	
		2. 농지원부 교부 및 열람	· 농지법 제50조	
		3. 자격증명 발급	· 농지법 제5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3.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사항	1. 영업신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2.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3.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청문)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제45조, 제47조 ·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4. 공수의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공수의 위촉 및 운영	· 안산시 공수의 조례	
녹색에너지과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에 대한 개선명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 같은법 제16조 · 같은법 제19조 · 같은법 제27조	구청장
		2.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업무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3. 사업자등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	· 같은법 제29조 · 같은법 제38조 · 같은법 제52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등		
		5.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6. 보고 · 조사 등		
		7. 과태료의 부과 · 징수		
	2.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27조 · 같은법 제29조 · 같은법 제54조	
		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4.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업무		
		5. 과태료의 부과·징수		
	3. 특정가스사용 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업무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4. 석유판매업에 관한 (일반판매소·이동판매소) 다음의 권한	1.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2.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3항	
		3.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같은법 제14조제1항 제3호	
		4. 청문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같은법 제40조	
		5.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같은법 제49조	
		6.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	·같은법 제38조제1항	
복 지 정책과	1.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구청장
	2.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	
		2.급여의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9조, 제34조	
	3 보장비용의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보장비용 납부통지 및 징수 ·독촉 (단, 자활급여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4. 의료급여대상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관리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5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	
		2. 의료급여증 관리 (발급, 변경, 재발급)	· 의료급여법 제8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부터 제14조	
		3. 의료급여수급권자 조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부터 제24조 · 의료급여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5. 행려환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행려환자 관리	· 의료급여법 제3조 · 같은법 시행령 제2조	
	6.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제24조	
	7.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접수 및 조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 동법 시행령 제17조 ·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동 장
	8. 의료급여대상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9.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부터 제24조	
사 회 복지과	1. 저소득장애인 복지 급여에 관한 권한	1. 장애수당 지원 (보장시설수급자 포함)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구청장
		2.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지원 (보장시설수급자 포함)	· 장애인복지법 제50조	
		3.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4. 장애인월동난방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6조	
	2.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권한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3.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업무에 관한 권한	1.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 장애인복지법 제66조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5. 기초연금 지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법 제14조	
		2. 노인 장수수당 지급	·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3조	
	6. 노인무료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	· 노인복지법 제4조	
	7.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1. 노인 건강진단 실시	· 노인복지법 제27조	
	8. 경로당 신고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경로당 설치 및 폐지신고 수리	· 노인복지법 제37조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9. 경로당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 · 노인복지법 제36조 · 노인복지법 제37조 · 노인복지법 제45조,제47조 · 안산시 경로당 지원조례 제4조	
		2.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3. 경로당 비품 및 물품 지원		
	10. 경로당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경로당 시설 개·보수	· 노인복지법 제4조	
	11.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 노인복지법 제4조	
	12. 장애인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장애인연금신청자에 대한 조사	· 장애인연금법 제9조	
		2. 장애인연금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장시설수급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11조	
		3. 장애인연금 지급 및 환수 (보장시설수급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7조	
	13.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에 관한 권한	1.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동 장
	14. 장애인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장애인연금 신청 접수	· 장애인연금법 제8조	
여 성 가족과	1.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10조 ·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부터 제1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5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부터 제9조	구청장
	2.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한부모가족의 조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2. 한부모가족 급여 지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3.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한부모가족 급여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동 장
		2. 복지자금 대여 신청서 접수 및 관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보 육 정책과	1.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보육료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	동 장
문 화 예술과	1. 게임·음악산업 및 비디오물 관련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구청장
		2.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3. 인터넷컴퓨터 게임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시설제공업 등록	제26조제2항	
		4. 노래연습장업 등록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5.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및 등록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7. 신고증·등록증·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19조	
		8. 신고·등록·허가사항의 변경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9. 영업의 승계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10. 폐업 및 직권말소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11. 사후관리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	
		12. 허가 취소 등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13. 행정처분 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14. 과징금의 부과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15. 폐쇄 및 수거 등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관한 법률 제70조	
		16. 과태료 부과·징수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99조	
		17. 게임물 관련 사업자, 노래연습장업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 등 교육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조	
		18. 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19. 모범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자 지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9조	
체 육 진흥과	1.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구청장
		2.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신고	· 같은법 제27조	
		3. 신고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	· 같은법 제32조제2항	
		4. 수수료 징수	· 같은법 제37조	
		5. 벌칙 및 양벌규정에 의한 조치	· 같은법 제38조,제39조	
		6. 과태료 처분	· 같은법 제40조	
식 품 위생과	1. 공중위생영업,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구청장
		2.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3.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4. 보고 및 출입 검사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5.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6. 공중위생업소의 폐쇄등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7. 과징금 처분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8.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9. 위생교육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10.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23조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	1. 영업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2)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2. 영업의 폐업 신고	· 식품위생법 제37조	
		3. 영업허가등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	
		4. 영업의 지위승계	· 식품위생법 제39조	
	3. 집단급식소 설치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 집단급식소 신고	· 식품 위생법 제88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4.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 출입, 검사, 수거 등	· 식품위생법제22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2. 건강진단	· 식품위생법 제40조	
		3.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41조	
		4. 위생등급	· 식품위생법 제47조	
		5.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의 개수명령 등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제72조	
		6. 허가취소,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 사실의 공표 (집단급식소는 해당 없음)	· 식품위생법 제75조,제79조 제81조, 제84조	
		7. 포상금 지급	· 식품위생법 제90조	
		8. 과태료	· 식품위생법 제101조	
	5.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장
		2. 공설매장·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매·화장 납골 증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3.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4. 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비징수	·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도 시 계획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관리 및 발급에 관한 권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리 및 발급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구청장
	2. 개발행위 허가 (스마트허브지역,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 토지형질변경 (면적 1,000㎡미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2. 토지분할허가 (면적 5,000㎡미만)		
		3. 토석채취허가 (부피 1,000㎥미만)		
		4. 물건적치허가 (면적 1,000㎡미만)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5. 공작물 설치허가		
건축과	1.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 행정조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7층 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한한다)	1. 위반건축물정비계획 수립 · 시행	· 건축법 제78조 ·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구청장
		2.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및 지도 단속	· 건축법 제37조 ·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3. 위반건축물행정조치 (행정대집행 · 계고 · 고발 · 이행강제금 부과 등)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건축법 제79조 · 건축법 제80조 · 건축법 제106조 부터 건축법 제111조	
	2. 공동주택위반건축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동주택 복리시설(단지내 상가 등)의 무단 용도변경 및 증 · 개축에 대한 지도(단속) · 감독	· 주택법 제59조 · 주택법 제91조	
	3. 건축물 허가·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 변경에 관한 권한(단, 증축의 경우 허가· 신고 전의 층수 및 연면적으로 함)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공사용 가설건축물 제외)에 관한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건축법 제20조	
	5.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	· 건축법 제83조	
	6. 건축물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대장 관리 및 작성	· 건축법 제38조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7.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 변경에 관한 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시 부설주차장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주차장법 제19조	
		2.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단서)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제29조, 제32조	
건설과	1. 도로점용(연결) 허가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점용(연결)허가	· 도로법 제38조, 제64조	구청장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 도로법 제41조	
		2. 도로점용부분의 원상회복	· 도로법 제43조	
		3. 권리의무·승계신고	· 도로법 제4조	
	3.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의 권한	1. 허가 취소	· 도로법 제83조	
		2. 허가조건의 변경		
		3. 공사중지의 명령		
		4. 공작물의 개축명령		
		5. 물건의 이전명령		
	4.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무단점용자의 지도단속	· 도로법 제38조	
		2.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도로법 제101조2	
	5.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 도로법 제23조	
		2.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도로법 제101조2	
		3. 운행제한차량의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 도로법 제59조	
	6. 노점상관리업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노점상 지도단속	· 도로법 제45조	
	7. 노상적치물 관리에	1. 노상적치물 단속	· 도로법제45조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대한 다음의 권한			
	8. 노점상생업자금융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융자금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 안산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2. 융자금 상환에 대한 조치		
토 지 정보과	1.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후 실태조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	구청장
		2. 이행강제금부과 · 징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	
		3.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4.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에 대한 선매자의 지정 및 통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4항 · 같은법 제122조	
	2. 토지거래 규제	1. 토지거래 계약의 검인 수리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2. 과태료의 부과·징수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별공지시가 확인서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구청장 동 장
도시디자인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림간판,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은 제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구청장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 신고 수리에 관한사항 (다만, 2개구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 제외)	· 같은법 제3조 ·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 같은법 제3조 · 같은법 시행령 제9조	
		4.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 같은법 제9조 ·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5. 허가,신고 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 같은법 제17조	
		6.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같은법 제10조	
		7. 행정대집행의 특례	· 같은법 제10조의2 ·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	
		8.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 같은법 제13조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허가의 취소 및 신고의 반려		
		9.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20조 ·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10.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20조의2 ·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환 경 정책과	1. 운행차의 점검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운행차의 수시점검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제1항 · 소음 · 진동관리법 제36조 제1항	구청장
		2. 운행차의 개선명령, 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결과 보고의 수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 소음 · 진동관리법 제38조	
		3. 운행차의 개선명령,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사전통지 및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소음 · 진동관리법 제60조	
	2.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스마트허브지역 제외)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등	· 소음 · 진동관리법 제15조	
		2.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등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	· 소음 · 진동관리법 제16조	
		3.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허가 및 위반자 청문실시, 허가의 취소 등	· 소음 · 진동관리법 제 8조 · 소음 · 진동관리법 제17조 · 소음 · 진동관리법 제51조	
		4.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소음 · 진동관리법 제18조	
		5.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소음 · 진동관리법 제20조	
		6. 특정공사 사전 신고의 수리	· 소음 · 진동관리법 제22조	
		7. 생활소음 · 진동발생자에 대한 필요조치 등	· 소음 · 진동관리법 제21조	
		8. 이동소음원에 대한 규제 및 조치	· 소음 · 진동관리법 제24조	
		9.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 진동의 방지	· 소음 · 진동관리법 제25조	
		10. 교통소음 · 진동 규제지역내에 대한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 요청	· 소음 · 진동관리법제27조	
		11.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	· 소음 · 진동관리법 제47조	
		12. 법규위반자 이의신청 사전통지 및 과태료의 부과	· 소음 · 진동관리법 제60조	
	3. 비산먼지 신고 및	1. 비산먼지 발생사업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스마트허브지역 제외)	신고(변경포함)의 수리	제1항	
		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조치 명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	
청 소 행정과	1.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 지도·단속	· 폐기물관리법 제8조	구청장
		2.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위임된 사무에 한함)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지도·점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2. 1회용품 사용 억제 지도·점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3. 폐기물배출자 분리 배출 지도·점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4. 보고 및 검사 등 (위임된 사무에 한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신고 및 지도·점검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2.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위임된 사무에 한함)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4호 및 제4의2호	
교 통 정책과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8조	구청장
		2. 부담금의 경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 ·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3. 분할납부 등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4. 가산금 및 독촉 등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2. 공영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처리	· 주차장법 제12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2. 공영주차장(노외 · 노상 · 임시) 관리 및 유지보수 ※ 유료주차장 제외	·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제15조	
	3. 노면표지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	· 도로교통법 제3조	
대 중 교통과	1. 주정차위반에 관한 권한	1. 주정차위반 단속 및 이의 신청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5조	구청장
		2.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관리, 감액처리 및 압류 해제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3. 주정차금지선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 도로교통법 제34조 · 동법 시행령 제11조	
		4. 주정차지도에 관한사항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	
		5. 장기 미 반환 차량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관한 사항	1. 방치차 조사 및 강제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2. 범칙금 부과 및 징수 등 범칙행위자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무	·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내지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58조 내지 제160조	
일자리 정책과	1. 국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에 관한 권한	1. 국내 무 · 유료직업소개 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폐지신고	· 직업안정법 제19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구청장
		2. 국내 무 · 유료직업소개 사업 지도단속	·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3. 국내 무 · 유료직업소개 사업 행정처분	· 같은법 제46조 내지 제50조	
	2. 허위구인 광고	1. 허위구인광고 지도단속	· 직업안정법 제34조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신·구조문대비표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 개정안)

현 행

【별표2】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감사관		<생 략>		
총무과		<생 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자 치 행정과		<생 략>		

개 정 안

【별표2】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감사관		<현행과 같음>		
총무과		<현행과 같음>		
안전사회지원과	1.재해·재난 관리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 및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구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구청장
		2.설해예방대책 및 설해로 인한 재해의 경감대책 강구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2.풍수해보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보험료 지원, 손해평가 관련 업무 지원	·풍수해보험법 제33조	
		2.대상시설물에 대한 실사 협조, 보험통계 자료 집적		
		3.보험가입 안내·홍보, 가입자 관리 등		
	3.예비군의 육성·지원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예비군부대(지역대/기동대)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유지의 지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32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2.예비군부대(지역대/ 기동대) 사무실의 신개축 및 보수의 지원		
자 치 행정과		<현행과 같음>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세정과		<생 략>			세정과		<현행과 같음>		
지 역 경제과		<생 략>			지 역 경제과		<현행과 같음>		
생 명 산업과	1.농지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신설>	1.농지 처분의무 통지(청문)	· 농지법 제10조 · 농지법 제55조	구청장	생 명 산업과	1.농지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농지 처분 의무 통지 (청문)	· 농지법 제10조 · 농지법 제55조	구청장
		2.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	· 농지법 제11조 · 농지법 제62조				2.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	· 농지법 제11조 · 농지법 제62조	
		3.유휴농지에 대한 대리 경작자 지정	· 농지법 제20조				3.유휴농지에 대한 대리 경작자 지정	· 농지법 제20조	
		4.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 농지법 제8조				4.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 농지법 제8조	
		5.농지임대차 관리	· 농지법 제23조				5.농지임대차 관리	· 농지법 제23조	
		6.농지 불법행위 지도 단속 및 고발·행정 처분(청문)	· 농지법 제42조 · 농지법 제54조 · 농지법 제57조 · 농지법 제58조 · 농지법 제59조 · 농지법시행령 제58조				6.농지 불법행위 지도 단속 및 고발·행정 처분(청문)	· 농지법 제42조 · 농지법 제54조 · 농지법 제57조 · 농지법 제58조 · 농지법 제59조 · 농지법시행령 제58조	
	2.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열람 교부에 관한 사항 <신 설>	1.농지원부의 작성 및 비치	· 농지법 제49조			2.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열람 교부에 관한 사항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농지원부의 작성 및 비치	· 농지법 제49조	
		2.농지원부 교부 및 열람	· 농지법 제50조				2.농지원부 교부 및 열람	· 농지법 제50조	
		3.자격증명 발급	· 농지법 제50조				3.자격증명 발급	· 농지법 제50조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3.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사항	1.영업신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3.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사항	1.영업신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2.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				2.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3.위반업소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청문)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제45조, 제47조 ·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3.위반업소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청문)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제45조, 제47조 ·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4.공수의에 대한 다음의 권한	1.공수의 위촉 및 운영	· 안산시 공수의 조례			4.공수의에 대한 다음의 권한	1.공수의 위촉 및 운영	· 안산시 공수의 조례	
녹색에너지과		<생 략>			녹색에너지과		<현행과 같음>		
복지정책과		<생 략>			복지정책과		<현행과 같음>		
사회복지과	1.저소득장애인 복지급여에 관한 권한	1.장애수당 지원 <신설>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구청장	사회복지과	1.저소득장애인 복지급여에 관한 권한	1.장애수당 지원 (보장시설수급자 포함)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구청장
		2.장애아동수당 및 보호 수당 지원 <신설>	· 장애인복지법 제50조				2.장애아동수당 및 보호 수당 지원 (보장시설수급자 포함)	· 장애인복지법 제50조	
		3.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3.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4.장애인월동난방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6조				4.장애인월동난방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6조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5.기초노령연금지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기초노령연금 지급	·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5.기초연금지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법 제14조	
	6~11.	<생 략>				6~11.	<현행과 같음>		
	12.장애인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장애인연금신청자에 대한 조사	· 장애인연금법 제9조			12.장애인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장애인연금신청자에 대한 조사	· 장애인연금법 제9조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2.장애인연금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장시설 입소 수급장애인 제외	·장애인연금법 제11조				2.장애인연금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장애인연금법 제11조	
		3.장애인연금 지급 및 환수 ※보장시설 입소 수급장애인 제외	·장애인연금법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7조				3.장애인연금 지급 및 환수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장애인연금법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7조	
	13.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에 관한 권한	1.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동장		13.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에 관한 권한	1.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동장
	14.장애인 연금에 관 한 다음의 권한	1.장애인연금 신청 접수	·장애인연금법 제8조			14.장애인 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장애인연금 신청 접수	·장애인연금법 제8조	
여 성 가족과		<생 략>			여 성 가족과		<현행과 같음>		
보 육 정책과		<생 략>			보 육 정책과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문 화 예술과	1.게임·음악산업 및 비디오물 관련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일반게임제공업 허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구청장
		<신설>	<신설>				2.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신설>	<신설>				3.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신설>	<신설>				4.노래연습장업 등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설>	<신설>				5.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신설>	<신설>				6.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및 등록	제26조제3항	
		<신설>	<신설>				7.신고증·등록증·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신설>	<신설>				8.신고·등록·허가사항 의 변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신설>	<신설>				9.영업의 승계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신설>	<신설>				10.폐업 및 직권말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신설>	<신설>				11.사후관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신설>				12.허가 취소 등	·게임산업 진흥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에 관한 법률 제35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신설>	<신설>				13.행정처분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신설>	<신설>				14.과징금의 부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신설>	<신설>				15.폐쇄 및 수거 등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0조	
		<신설>	<신설>				16.과태료 부과·징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99조	
		<신설>	<신설>				17.게임물 관련 사업자, 노래연습장업자, 비디오물 시청제공 업자 등 교육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조	
		<신설>	<신설>				18.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신설>	<신설>				19.모범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자 지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9조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체육진흥과	1.신고대상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구청장
		<신설>	<신설>				2.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신고	·같은법 제27조	
		<신설>	<신설>				3.신고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32조제2항	
		<신설>	<신설>				4.수수료 징수	·같은법 제37조	
		<신설>	<신설>				5.벌칙 및 양벌규정에 의한 조치	·같은법 제38조, 제39조	
		<신설>	<신설>				6.과태료 처분	·같은법 제40조	
일자리정책과	1.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에 관한 권한	1.국내 무·유료 직업소개 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폐지신고	·직업안정법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국내 무·유료 직업소개 사업 지도단속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삭제>	<삭제>	
		3.국내 무·유료 직업소개 사업 행정처분	·같은법 제46조 내지 제50조				<삭제>	<삭제>	
	2.허위구인광고	1.허위구인광고 지도단속	·직업안정법 제34조			<삭제>	<삭제>	<삭제>	
식품위생과	1.공중위생영업,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 <신설>	1.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구청장	식품위생과	1.공중위생영업,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음 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구청장
		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3.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3.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4.보고 및 출입검사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4.보고 및 출입검사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5.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5.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6.공중위생업소의 폐쇄등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6.공중위생업소	·공중위생관리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7.과징금 처분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의 폐쇄등	법 제11조	
		8.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7.과징금 처분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9.위생교육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8.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10.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23조				9.위생교육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10.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23조	
	2.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 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신설>	1.영업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	· 식품위생법 제37조			2.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 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영업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	· 식품위생법 제37조	
		2.영업의 폐업 신고	· 식품위생법 제37조				2.영업의 폐업 신고	· 식품위생법 제37조	
		3.영업허가등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				3.영업허가등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	
		4.영업의 지위 승계	· 식품위생법 제39조				4.영업의 지위 승계	· 식품위생법 제39조	
	3.집단급식소 설치에 대한 다음의 권한 <신설>	1.집단급식소 신고	· 식품위생법 제88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3.집단급식소 설치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집단급식소 신고	· 식품위생법 제88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4.식품자동판매기영업,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 <신설>	1.출입, 검사, 수거 등	· 식품위생법제 22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4.식품자동판매기영업,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1.출입, 검사, 수거 등	· 식품위생법제 22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2.건강진단	· 식품위생법 제40조				2.건강진단	· 식품위생법 제40조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3.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41조			선감동, 풍도동 제외)	3.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41조	
		4.위생등급	· 식품위생법 제47조				4.위생등급	· 식품위생법 제47조	
		5.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 의 개수명령 등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제72조				5.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 의 개수명령 등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제72조	
		6.허가취소,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 사실의 공표 (집단급식소는 해당 없음)	· 식품위생법 제75조,제79조,제81조, 제84조				6.허가취소,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 사실의 공표 (집단급식소는 해당 없음)	· 식품위생법 제75조,제79조,제81조, 제84조	
		7.포상금 지급	· 식품위생법 제90조				7.포상금 지급	· 식품위생법 제90조	
		8.과태료	· 식품위생법 제101조				8.과태료	· 식품위생법 제101조	
	5.	<생 략>					<현행과 같음>		
도 시 계획과	1.토지이용 계획확인 서의 관리 및 발급에 관한 권한	1.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관리 및 발급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구청장	도 시 계획과	1.토지이용 계획확인 서의 관리 및 발급에 관한 권한	1.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관리 및 발급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구청장
	2.개발행위 허가(스마트허브지역)	1.토지형질변경 (면적1,000㎡ 미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2.개발행위 허가(스마트허브지역,대부동동,대부북동,대부남동,선감동,풍도동 제외)	1.토지형질변경 (면적1,000㎡ 미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2.토지분할허가 (면적5,000㎡ 미만)					2.토지분할허가 (면적5,000㎡ 미만)		
		3.토석채취허가 (부피1,000㎥ 미만)					3.토석채취허가 (부피1,000㎥ 미만)		
		4.물건적치허가 (면적1,000㎡ 미만)					4.물건적치허가 (면적1,000㎡ 미만)		
		5.공작물 설치 허가					5.공작물 설치 허가		
안전총괄과	1.재해·재난 관리업무에 관한 다 음의 권한	1.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 및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구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설해예방대책 및 설해 로 인한 재해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삭제>	<삭제>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경감대책 강구							
	2.풍수해보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보험료 지원, 손해평가 관련 업무 지원	·풍수해보험법 제33조			<삭제>	<삭제>	<삭제>	
		2.대상시설물에 대한 실사 협조, 보험통계 자료 집적					<삭제>		
		3.보험가입 안내·홍보, 가입자 관리 등					<삭제>		
	3.예비군의 육성·지원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예비군부대(지역대/ 기동대)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유지의 지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32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삭제>	<삭 제>	<삭제>	
		2.예비군부대(지역대/ 기동대) 사무실의 신개축 및 보수의 지원					<삭제>		
건축과	1~2.	<생 략>			건축과	1~2.	<현행과 같음>		
	3.건축물 허가·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신설>	1.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 변경에 관한 권한(단, 증축의 경우 허가· 신고 전의 층수 및 연면적으로 함)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			3.건축물 허가·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 변경에 관한 권한(단, 증축의 경우 허가· 신고 전의 층수 및 연면적으로 함)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	
		2.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2.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4.가설건축물 축조신고(공사용 가설건축	1.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법 제20조			4.가설건축물 축조신고(공사용 가설건축	1.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법 제20조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물 제외)에 관한 권한 <신설>					물 제외)에 관한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5.옹벽 등의 공작물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신설>	1.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	· 건축법 제83조			5.옹벽 등의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 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	· 건축법 제83조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건설과		<생 략>			건설과		<현행과 같음>		
토 지 정보과		<생 략>			토 지 정보과		<현행과 같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생 략>			도시디자인과		<현행과 같음>		
환 경 정책과		<생 략>			환 경 정책과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청 소 행정과	1.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 지도· 단속	·폐기물관리법 제8조	구청장
		<신설>	<신설>				2.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함)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	<신설>	<신설>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지도·점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신설>	<신설>				2.1회용품 사용 억제 지도·점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신설>	<신설>					제10조	
		<신설>	<신설>				3.폐기물배출자 분리 배출 지도·점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4.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사무에 한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신설>	<신설>	<신설>			3.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신고 및 지도·점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신설>	<신설>				2.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함)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4호 및 제4의2호	
교 통 정책과		<생 략>			교 통 정책과		<현행과 같음>		
대 중 교통과		<생 략>			대 중 교통과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일자리 정책과	1.국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에 관한 권한	1.국내 무·유료 직업소개 사업 등록 및 변경등 록, 폐지신고	·직업안정법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구청장
		<신설>	<신설>				2.국내 무·유료 직업소개 사업 지도단속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신설>	<신설>				3.국내 무·유료 직업소개 사업 행정처분	·같은법 제46조 내지 제50조	
	<신설>	<신설>	<신설>			2.허위구인 광고	1.허위구인광고 지도단속	·직업안정법 제34조	
문 화 예술과	1.게임·음악산업 및 비디오물 관련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일반게임제공업 허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삭제>	<삭제>	
		3.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삭제>	<삭제>	
		4.노래연습장업	·음악산업 진흥				<삭제>	<삭제>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등록	에 관한 법률 제18조						
		5.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삭제>	<삭제>	
		6.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신고 및 등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삭제>	<삭제>	
		7.신고증·등록증·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삭제>	<삭제>	
		8.신고·등록·허가사항의 변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삭제>	<삭제>	
		9.영업의 승계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삭제>	<삭제>	
		10.폐업 및 직권말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영화				<삭제>	<삭제>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11.사후관리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				<삭제>	<삭제>	
		12.허가 취소 등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삭제>	<삭제>	
		13.행정처분 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삭제>	<삭제>	
		14.과징금의 부과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삭제>	<삭제>	
		15.폐쇄 및 수거 등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0조				<삭제>	<삭제>	
		16.과태료 부과·징수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99조				<삭제>	<삭제>	
		17.게임물 관련	· 게임산업 진흥				<삭제>	<삭제>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 령	수임기관
		사업자, 노래연습장업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등 교육	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조						
		18.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삭제>	<삭제>	
		19.모범 비디오물 시청제공 업자 지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9조				<삭제>	<삭제>	
체육진흥과	1.신고대상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신고	· 같은법 제27조				<삭제>	<삭제>	
		3.신고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	· 같은법 제32조제2항				<삭제>	<삭제>	
		4.수수료 징수	· 같은법 제37조				<삭제>	<삭제>	
		5.벌칙 및 양벌규정에 의한 조치	· 같은법 제38조,제39조				<삭제>	<삭제>	
		6.과태료 처분	· 같은법 제40조				<삭제>	<삭제>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52